

의안번호	2202180
의 퇴 인	황희 의원
회 답 일	2024.06.25.
추계번호	24C11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2 (사전 안전점검의 실시)	(제1항)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전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의2 (사전 안전점검의 실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¹⁾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전 안전점검’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될 교육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 사업규모, 예산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2024년 현재 시설 안전점검 실시 비용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점검이 실시될 시설의 규격 등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
 -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비용은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
 - 비용은 정액적산방식(용도, 규격별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선택과업비용은 실비로 계상됨
-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되어 교육시설로 사용될 건물 수 및 규격 등을 현시점에서 일률적인 가정하기 어려워 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3년 10월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의 일부로 ‘(신설형) 매입형 학교²⁾’를 발표하였으며, 이의 요건으로 학교의 과대·과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또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요구가 있는 지역,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시함
 - 다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도 관련된 구체적 사업지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³⁾,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관련 사업규모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매입형 학교는 기설된 건물 또는 신축 건물 중 교사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구축하는 도시형 캠퍼스임(‘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참조(2023.10. 서울특별시 교육청))

3) 2024년 현재 고덕강일3지구에 24학급 이하 규모로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사업이 2029.3.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 외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